



모욕죄 국내 판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박장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사

The Insult Law in South Korea and Content Analysis of Recent Legal Cases*

Jang Hee Park**

(Lecture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claims that punishing extreme speech as a criminal offense through the insult law is inconsistent with the value system of liberal democracy. Rather than advocating that insults and extreme remarks should be restricted on a moral basis, or asserting that the insult law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our society due to its chilling effect over freedom of speech without any empirical evidence, it attempts to analyze recent legal cases and explores how the insult law is currently applied in society. This empirical approach focuses on the effects of the insult law on freedom of speech and civility norms of community, thus explores how discursive power of our society functions through the insult law. Methodologically, this study collected 7,364 insult cases occurred between January 1, 2013 and December 31, 2017 via the court's online system. From the cases, it extracted 505 legal cases by systematic sampling. By using the method of empirical legal studies, the sample data was analyz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analyses examin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laintiffs and defendants, their social relations, contents and expressions of insulting remarks, the court's dispositions, and cross tabulations of these variables. The results reveal the following three key findings: First, the insult law tend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ublic figure and public official. In particular, police officers frequently resort to the insult law to curtail citizens' freedom of speech, and this leads to the outcome where the law serves as a de facto

* This journal article is crafted and revised based on Jang Hee Park's 2019 Ph.D. thesis. (본 논문은 박장희의 2019년도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 정리 및 수정 보완했습니다.) The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Development Project for Social Science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9 and by the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20. (이 연구는 2019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인력 육성사업과 2020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jpark.inbox@gmail.com

discursive power to enforce civility toward public authorities. Second, the insult law is most likely to sanction freedom of speech for those who are at the lower ranks of the social hierarchy, leading to the possibility that the insult law deprives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of the tool for resistance. Third, the insult law tends to be used as a means of enforcing civility norms of community. When we insulted strangers or swore in public, we were more likely to be found guilty of insult charges, compared to when we insulted acquaintances or without swearing. Extreme remarks should be avoided and those who make extreme remarks should be subject to sanctions. However, state's regulations of extreme speech can be easily distorted and polluted by politics. Regulations can further slide down the slippery slope to form a rigid, punitive society, where citizens resort to legal sanctions to resolve any social conflicts originating from extreme remarks. A sound democracy is not likely to stem from overly-regulated and over-censored society where one should have to worry about the legal consequences of free speech rather than following his or her own conscience. Further, legal sanctions of extreme words will likely beget timid and discouraged citizenry leaving little room for free speech. Ultimately, we need to accept radical, dirty, rude, or otherwise negative and extreme remarks of improper inappropriate emotions as a social cost to pay for a more democratic society.

Keywords: Insult Law, Freedom of Speech, Civility Norms of Community, Discursive Power, Extreme Speech

1. 문제제기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검찰연감DB)에 따르면, 2002년 2,077건이었던 모욕죄 접수건은 2011년 1만건을 초과했고, 2015년 38,764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38,14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2002년과 2018년을 비교해본다면 모욕죄 접수 건수는 약 19배 증가했고, 접수건 중 기소건 또한 595건에서 8,144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¹⁾ 모욕죄 소송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사회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부지불식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단 나쁜 말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법률적 강제를 통해 사적, 공적 자리에서 허용되는 발언의 내용 및 표현의 범위가 정해지는 경향이 반복되며, 모욕죄는 우리 사회의 발언의 자유(freedom of speech)²⁾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순기능적 측면에서 모욕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존중을 강화하고, 모욕발언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개인의 발언의 자유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모욕죄가 발언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말만하고 말 것이 아니라, 발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구체적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욕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 누구의 발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지, 누구의 권익에 기여하는지, 모욕죄를 통한 발언의 자유 규제 이면에 작용하는 권력의 성격은 어떠한지, 한걸음 더 나아가 발언의 자유에 대한 위축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모욕죄가 적용된 사례들을 관찰해보면, 과연 해당 발언이 청자의 인격, 존엄, 사회적 명예를 침해한 발언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다. 박경신과 김가연(2011)은 공공연하게 욕한 경우 청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발화자의 저속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되려 발화자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모욕발언 발화자가 실질적으로 청자의 인격, 존엄,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한다기보다는 모욕발언 발화자가 청자에게 교양 없이 무례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처벌하는 듯한 경우가 많아 보인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하는 사회적 예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1) 접수건 증가추세와 달리, 모욕죄 기소율은 2008-2012년 50% 이상을 기록하다 점점 감소해서 2018년에는 약 21%로 줄었다.

2) 이 연구는 스피치(speech)가 내포한 행위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freedom of speech'를 '발언의 자유'로 번역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실제 모욕죄 소송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 검토를 통해 현실에서 모욕죄가 우리 사회의 발언의 자유 및 공동체 예절규범에 미치는 영향과 모욕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담론권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기존의 모욕죄 연구들이 소수의 모욕죄 사례에 집중해 분석의 깊이를 더하려 했다면, 이 연구는 소수의 모욕죄 사례들에 대한 심층분석 보다는 모욕죄 사건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탐색하려 한다. 소수의 모욕죄 사건들에 대해서만 정성분석 하다보면, 해당 사건들의 발화자들을 응징하고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일부 개별 모욕죄 사건의 경우 모욕죄 소송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귀결은 모욕죄 사건들을 과편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모욕죄 사건의 전반적인 경향성에 주목함으로써, 소수의 모욕죄 사례만을 분석했을 때 간과할 수 있는 모욕죄의 사회적 효과를 탐색하려 한다. 모욕죄 국내 판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겠다.

2. 이론적 논의

1) 모욕죄와 극단적 발언(extreme speech)

모욕죄를 둘러싼 법현실을 탐색하기 전에 규제대상 발언의 유형과 성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모욕적 발언은 극단성(extremity)을 띠는데, 해당 발언의 극단성 여부가 모욕죄의 실질적 규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은 헤어와 웨인스틴(Hare & Weinstein, 2009)이 편찬한 『극단적 발언(Extreme Speech)』의 목차 및 이 책에 실린 논문 내용들을 참조해 극단적 발언(extreme speech)의 유형을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책은 극단적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 지역 내에서 전개된 주요 논의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1장은 극단적 발언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2장은 증오발언 일반을 다루며, 3장은 종교적 증오선동(incitement)을, 4장은 세속적 가치(secular values)를 부정하는 종교적 발언과 행동(conduct)을, 5장은 극우단체들이 프로파간다를 이용해 테러리즘을 선동하거나 찬양(glorification)하는 발언을 다루고, 6장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7장은 정부의 언론규제를 다루는 방식, 즉 정부가 수사적 과장(rhetorical hyperbole), 욕설(epithet), 풍자(parody), 선동(incitement), 강한 협박(true threat), 싸우자는 말(fighting words)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극단적 발언들을 어떻게 규제하는 지를 연구했다.

이 책의 목차 및 책에 실린 미국/유럽을 분석대상으로 한 주요 논문들을 토대로, 극단적 발언의 유형을 표현방식, 내용, 효과의 세가지 기준으로 분류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 먼저, 감정의 극단적 표현이다. 모욕, 증오, 혐오, 멸시 등과 같이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발화 내용 자체보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극단성을 띤다. (2) 극단적인 사상 및 내용의 표현이다.³⁾ 극우 혹은 극좌 정치집단, 극단적 원리주의 종교집단, 인종 우월주의 집단의 발언과 같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사상과 관점을 담은 경우이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의 경우도 극단적 사상 및 내용을 담은 발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3) 행위를 수반하는 극단적 표현이다. 예를 들자면 평온을 깨뜨리는 ‘싸우자는 말(fighting words)’⁴⁾이나 ‘진정한 위협(true threat)’⁵⁾과 같은 경우로, 발언으로 인해 명백하게 해악이 야기되는 경우이다. 즉각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것과 같이 효과가 외부로 실현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1), (2), (3)의 세 가지 유형의 극단적 발언들이 상호배제적이지는 않다.

Table 1. Types of Extreme Speech

극단적 발언의 유형	분류기준	설명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발언	표현방식	모욕, 증오, 혐오, 멸시 등과 같이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공동체의 예절규범에 어긋나는 발언.
극단적 사상 및 내용을 담은 발언	내용	인종우월주의 집단, 원리주의 종교집단의 발언과 같이 극단적 사상 및 관점을 담은 발언.
극단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발언	효과	평온을 깨뜨리는 말로 말하기만 하면 상해를 입히거나 즉각적인 평화를 깨뜨리는 발언. 예시: 싸우자는 말, 진정한 위협

예비적 관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모욕죄는 특히 극단적 발언의 첫번째 유형인 모욕, 증오, 혐오, 멸시 등과 같이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발언들을 강하게 규제하려는 경향을 띤다. 이는 우리 법원의 모욕에 대한 정의에서도 드러나는데, 우리 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3) 극단적 사상 및 내용의 표현은 National Socialist Party of America v. Village of Skokie(1977) 판결에서 보듯이 ‘관점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 금지’와 관련된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네오나찌 집회 개최를 불허한 일리노이주 스코키 시의 판결을 번복했다. 수정헌법 제1조의 ‘관점차별금지원칙, 즉 특정한 관점에 따라 발언의 자유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4) ‘싸우자는 말’이란 Chaplinsky v. New Hampshire(1942) 판례에서 기인한 개념으로, “말하기만 하면 상해를 입히거나 즉각적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는 표현(words which by their very utterance inflict injury or tend to invite an immediate breach of peace)”을 뜻한다. “대면적 갈등 상황에서 타인에게 행한 심한 공격적 표현(abusive epithets directed to others in a face-to-face confrontation)”(p. 53)인 셈이다(Weinstein, 2009).

5) Planned Parenthood of the Columbia/ Willamette, Inc. v. American Coalition of Life Activists, 290 F.3d 1058 (9th Cir. 2002) 판례에서 확인한 개념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보기에 협박을 당한 사람에게 물리적 폭력이 가해질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발언이다.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경멸적 감정이란 개념 규정이 매우 애매한 감정으로, 모욕, 증오, 혐오, 멸시 등 모든 공격적인 감정과 등치가능한 감정이다. 부적절한 감정표현에 기반한 모든 발언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욕죄를 통한 부적절한 감정표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근래 두드러진 경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오발언(hate speech)에 가까운 발화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통해 처벌하려 한다는 점이다. 증오발언은 특정한 인종, 성(sexuality) 등에 대한 집단적 차별의식을 포함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 증오발언 또한 증오라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발언이다보니, 모욕발언과 구분이 안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국내의 경우 증오발언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 법률적 공백을 모욕죄로 보완하려는 듯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9년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모욕죄의 형량을 가중하도록 양형기준을 보완한 것에서도 모욕죄를 통해 증오발언을 규율하려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모욕발언이지만 모욕개념의 포괄성과 국내 모욕죄가 증오발언도 함께 처벌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모욕죄와의 관련 범위 내에서 증오발언에 대한 일부 논의를 함께 검토한다.

2) 인간의 자율성(autonomy)과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

모욕죄는 우리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양식 전반, 특히 발언의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내적 독백을 통해 ‘내가 이러한 발언을 한다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발언이 사회적·도덕적 지탄을 받을까’, ‘나의 발언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을까?’라는 질문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질문이며, 그러한 내면적 성찰을 통해 나의 발언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나의 발언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한다면, 발언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군의 학자들은 비록 사회적 역효과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베이커(Baker, 1989)는 자유주의 이론(liberty theory)에 기반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발언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했다. 베이커는 전통적으로 발언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거가 되었던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marketplace of ideas theory)의 도구적 논리를 뛰어넘어 발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려 했다.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는 발언의 자유를 진리 발견을 위

한 도구로 간주한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발언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보다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효용있다는 것이다. 베이커는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의 공리주의적인 측면을 비판하며, 발언의 자유를 인간의 근원적인 자율성의 문제와 연계시켰다. 베이커(2011)에 따르면, 국가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념에 부합하는 모든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커는 개인이 생각하는 의미있는 삶의 이미지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형태의 삶을 선택한 이유를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베이커는 발언의 자유를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인 자율성과 연계시킴으로써 우리가 왜 금기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해 강력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아무리 저열하고 극단적 발언이라 하더라도 개인은 자신의 저열함과 극단성을 외부에 드러내고 표현할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공동체적 가치가 종종 개인주의적 가치보다 우선시 되는 우리 사회에서 한번쯤 되짚어볼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율성 보장만을 근거로 발언의 자유를 주장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월드론(Waldron, 2012/2017)은 베이커를 비판하며, 발화행위가 순수한 자기 표현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발화 행위의 목적이 자기 표현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고안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월드론은 증오발언과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반사회적 가치와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낼 경우, 사회적 공공선을 약화시키며, 공동체가 소수자에게 약속한 것들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드론과 유사한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모욕죄를 통해 부적절한 발언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 속에서도 자주 확인된다. 법리적으로는 모욕죄가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모욕죄 유지의 근거로 사회적 공공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거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 침해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율성을 근거로 발언의 자유를 논할 때의 또 다른 문제는 현실 적용에 있어서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데 있다. 드워킨(Dworkin, 2006)이나 포스트(Post, 2009a, 2009b)와 같은 학자는 발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민주주의의 정당성 측면에서 찾고 있다. 민주주의가 하나의 지배 형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발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드워킨(2006)은 개인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신념, 취향, 편견 등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당한 이들이 집단의 결정을 따르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는 이들이 집단의 판단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말할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위해 증오발언까지도 허용해야 한다는 드워킨의 논리는 우리 사회의 모욕죄와 관련해서도 화두를 던진다. 모든 무례한 발언들, 모든 부적절한 감정표현들을 응징적으로 처벌하려는 우리 사회의 제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발언 및 감정표현이 실상은 민주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밀의 위해 원칙(harm principle)에 따르면, 만일 극단적 발언이 타인에게 실질적이며 물리적 피해를 가한다면 이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극단적 발언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극단적 발언이 피해를 실체화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심도깊게 고민한 학자가 버틀러이다. 버틀러의 언어수행성 논의를 이어서 살펴보겠다.

3) 모욕죄와 언어 수행성(performativity)

발언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실질적인 해악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발언을 규제하려면 그에 앞서 해당 발언의 언어 수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버틀러(Butler, 1997/2016)는 오스틴(Austin, 1975/1992)이 언어철학에서 발전시킨 수행성 개념에 착안하여, 언어적 수행성의 입장에서 발언의 자유를 옹호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으며, 모든 발언을 발화수반행위로 보는 견해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발화수반행위란 말하면서 동시에 행하고 있는 행위를 뜻한다.

모욕발언이나 증오발언과 같은 극단적 발언들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개개인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언어수행성에 대한 입장 차이로 보인다. 험악한 발언들이 해악을 현실적으로 생산해낸다고 볼 것이냐 아니냐의 관점에 따라서 그러한 발언들에 대한 자유를 허용할 것이냐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당신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라는 말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상대방을 구속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말을 했을 뿐이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데, 여기서 보듯이 모든 언어행위가 효과를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Butler, 1997/2016). 이는 언어가 해악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함을 뜻한다.

버틀러(1997/2016)는 또한 미국 사법부가 증오발언의 성격에 따라 발언의 행위성에 대해 일관성 없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십자가 조각은 표현의 자유로 간주한 반면, 군대 내 동성애자 발언이나, 소수자 집단의 예술적 표현은 규제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Butler, 1997/2016). 발언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이러한 규제적 법률이 정치적 의

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극단적 발언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미국 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동일하게 안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법원만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의도없이 절대적 중립성을 지니고 부적절한 발언들을 규제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버틀러는 언어수행성의 문제를 국가의 담론권력과 연계시켜 국가 권력이 개인의 발언의 자유에 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어떠한 말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국가의 행위 자체가 일종의 표현이면서, 국가에게 담론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utler, 1997/2016). 국가가 이러한 담론권력을 가질 경우,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증오발언은 차별적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만일 법원이 없다면 증오발언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Butler, 1997/2016). 이는 국가에게 시민의 권리를 양도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국가에게 양도된 담론권력(discursive power)에 대해 우려감을 표현한다(Butler, 1997/2016).

4) 모욕죄와 공동체 예절규범

모욕발언과 같은 극단적 발언이 과연 언어수행성을 지녔느냐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또 하나 부각되는 질문은 모욕죄가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무엇이나에 관한 것이다. 모욕죄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이 사회적 명예, 사회적 공공선, 인간의 존엄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공동체 예절규범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는 논의들이 있다. 모욕죄 소송 내용의 사회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에 한층 무게가 실린다. 대개의 경우,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한다면 인종, 국적, 종교에 대한 비관적 발언을 허용한다(Post, 2009b). 인종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과학자, 이슬람 테러 조직에 대한 사회학적인 기사, 인종폭력/이민으로 인한 부담 등에 대한 엘리트들 간의 토론의 경우, 차별과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해악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지켰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Post, 2009b). 포스트는 모든 증오발언들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respect)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규제된다고 주장한다.⁶⁾

6) 증오발언과 모욕발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증오발언과 모욕발언을 구별하기 어렵고, 모욕발언보다도 강도가 강한 증오발언이 예절의 문제라면 모욕발언 또한 예절의 문제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모욕죄를 적용하는 경우들에서도 드러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격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비방했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예의를 지켜서 적절한 어휘와 표현을 구사해 상대방을 조목조목 비방했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모욕죄의 경우도 일상에서 예절과 존경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여지가 충분하다.

포스트(Post, 2009b) 외에도 휘트만(Whitman, 2000) 또한 모욕발언에 대한 규제를 공동체의 예절규범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휘트만은 모욕죄(law of insult)를 순수하게 예절에 관한 법(pure law of civility)으로 간주했는데, 휘트만에 따르면 모욕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사회적 평판이 아닌 개인적 명예와 존엄(personal honor/dignity)으로, 대다수 법률적 모욕(legal insults)은 경멸의 표현(expressions of contempt)에 불과하며, 결국 모욕죄는 평판(reputation)에 대한 손상이 아닌 불손함(disrespect)의 문제라는 것이다.

5) 말을 통한 권력의 행사

모욕죄는 공동체 예절규범의 문제인 동시에 권력의 문제일 수 있다. 모욕죄는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어떠한 발언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발언이며 어떠한 발언이 허용될 수 없는 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러한 기준을 어길 경우 국가가 나서서 발화자를 처벌한다. 이준용(2011)은 말과 권력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사회가 말하기 내용과 방법을 규제하는 방식은 그 사회가 기반한 권력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모욕죄는 말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한 규제로 우리 사회가 토대로 삼고 있는 권력의 단면을 제시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이 사회적으로 지향하는 비는 법이 제정하 바를 갈등없이 준수하는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욕죄의 사회적 기능 이면의 권력 작용을 룩스(Lukes)가 말하는 3차원적 권력의 맥락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룩스(Lukes, 1974/1992)는 권력을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했다. 1차원적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B로 하여금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A의 성공적인 시도”(23쪽)이다(Lukes, 1974/1992). 1차원적 시각은 누가 공동체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가와 더불어 관찰 가능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Lukes, 1974/1992). 2차원적 시각은 의사결정행위(decision-making)에 초점을 둔 1차원적 권력개념을 보완해, 비결정행위(nondecision-making)를 함께 검토한다. 비결정행위란 특정한 요구가 외부로 표출되기 전에 막거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두거나, 의사결정 영역에 접근하기 전 없애는 행위이다(Lukes, 1974/1992). 룩스는 그렇지만 2차원적 시각 또한 정치적 불만이 있는 곳에서

만 비결정행위 권력이 존재한다고 한정되었다고 비판했다. 불만이 없다고 해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룩스(Lukes, 1974/1992)는 권력에 대한 1, 2차원적 시각을 넘어서서, 3차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룩스의 3차원적 시각은 '잠재적 쟁점'이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 배제되는지에 주목했다. 룩스의 권력에 대한 3차원적 시각에 따르면, 권력은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 발생할 수 있다. 룩스는 잠재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잠재력이 한번도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룩스가 말하는 잠재적 갈등이란 권력 행사자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에게 배제당한 이들의 실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모순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룩스는 배제당한 이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현하거나 인식하지조차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욕죄 이면에 작동하는 권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권력, 즉, 3차원적 권력이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의 저항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욕죄는 개인의 사적, 공적 발언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사회적 강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역사적으로 받아왔다. 모욕죄의 역효과로 인해 다수의 국가가 모욕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박경신, 2009).

이준웅(2009)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게 대하는 예절의 방식을 '지배-예절'이라고 규정했는데, '욕설하기'나 '반말하기'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지배-예절'을 깨뜨리는 전복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웅은 우리 사회와 같이 존댓말 쓰기와 같은 예절이 강하게 유지되는 사회일수록, 권력이 약한 이들이 의사소통 이외의 자원이 없을 때, '욕설하기'나 '반말하기'와 같은 무례한 의사소통 양식을 강력한 전략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⁷⁾ 클루니와 웹(Clooney & Webb, 2017) 또한 모욕발언이 권력을 지닌 이들에 저항하거나 불법적 행위를 경고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욕발언이 저항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7) 우리말 욕설을 12개의 범주로 분류한 김상윤(2002)은 우리말의 경어법이 조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만큼이나 비속어도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우리 사회의 계급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김상윤이 수집한 욕설 중 빈번하게 쓰이는 욕설은 '개새끼', '상놈의 새끼', '개쌍놈', '놈', '년', '새끼' 였는데, 김상윤은 이러한 욕설들이 억눌린 이들의 불평과 불만을 발산시키는 통로이자 그러한 감정을 달래고 삭이는 기제라고 평가했다. 장경희(2010) 또한 국어 욕설들의 경우 존중 욕구를 모독하는 것과 깊이 관련있다고 지적했다. 장경희는 '놈', '년', '새끼' 등이 국어의 대표적 욕설로 쓰이는 이유는 이들이 상대의 신분존중 욕구를 무시 또는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6) 극단적 발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앞선 논의들과는 달리 발언의 자유가 사회적 공공성이나 인간의 존엄성과 충돌한다면 발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들도 발언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의 중대한 한 축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선고 2012헌바37판결(2013. 6. 27)은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요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의 모욕죄에 대한 주류적 입장 및 극단적 발언에 대한 규제 근거를 엿볼 수 있다. 합헌 결정 요지는 첫째,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모욕죄가 금지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 기관 또한 '모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모욕은 상대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할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셋째,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형사처벌 가능하고,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으며, 넷째, 법원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간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월드론(2012/2017)은 부적절한 발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로, 증오발언과 같은 극단적 발언이 사회적 공공선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론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상호포용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극단적 발언은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회적 확신을 깨뜨려버린다는 것이다. 한결음 더 나아가 월드론은 증오발언이 인간의 존엄성과 반대되는 확신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과 법에 상관없이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들이 극단적 발언 발화자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다. 우리 사회의 '일베 현상'도 월드론이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지닌 확신을 깨뜨린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헤이먼(Heyman, 2010) 또한 발언규제론의 입장에 서있는데, 헤이먼은 상호존중(mutual respect)을 개인의 자연권적 기본권리 및 공적토론의 전제로 강조했다. 개인이 공동체에서 자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인간성(personhood)을 인정받아야 하며, 개인의 인간성을 인정받는 것은 여타의 권리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즉, 발언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헤이먼의 입장에서 보자면 증오발언과 같은 극단적 발언은 개인의 인정의 권리(right to recognition)를 침해하고 상호존중원칙을 위배함으로써 헌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3. 연구질문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모욕죄 소송 실사례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모욕발언 발화자와 모욕발언 청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 모욕매체, 모욕내용, 법원판결을 분석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한다. 먼저 [연구질문1]을 통해, 소송 당사자들의 특성과 관계를 탐색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사회적 관계가 권력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모욕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공인이고, 모욕소송이 발생한 원인이 공인으로서의 업무에 기인한다면 이들 간에 권력 관계가 발생할 것이며, 그러한 권력 관계가 모욕 상황에서 작동하는 양상을 탐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친분관계와 위계관계가 모욕발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재현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모욕담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질문2]를 통해 모욕매체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모욕죄가 사용되고 있는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모욕발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이 어떠한 극단적 발언을 했을 때 모욕죄 소송이 발생하는 지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질문2]에 성공적으로 답함으로써, 모욕죄 소송의 모욕매체의 분포를 파악하고, 모욕내용에 대한 탐색을 통해 모욕죄와 공동체 예절규범 규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려 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공동체 예절이란 친분관계가 약하거나 전혀없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예절로 동료시민들 상호 간의 적절한 대응 및 소통 방식을 의미한다.

[연구질문3]을 통해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가 모욕매체와 갖는 관련성을 탐색한다. 모욕매체는 모욕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모욕죄 소송 사례들의 커뮤니케이션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질문4]는 모욕내용이 피고인과 고소인 간의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발화자들 간의 권력관계는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기인할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질문4]를 통해 특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피고인이나 고소인에게 특정한 방식의 모욕발언 내용이 발생하는지 검토함으로써,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기인한 권력이 모욕발언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 탐색한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모욕발언 내용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사회적 관계에서 기인한 권력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욕발언을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더불어, 모욕매체에 따라 어떠한 모욕발언 내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특정 모욕매체에서 특정한 모욕발언 내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모욕 발화 방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질문5]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 모욕매체, 모욕발언 내용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받는지를 탐색한다. 특히, 구체적 모욕발언 내용을 탐색하고 이때의 벌금형의 수준을 탐색한다면, 모욕죄가 우리 사회의 담론권력으로 작용하는 구체적 양상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모욕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을 살펴봄으로써,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모욕발언의 경향과 수위 또한 검토한다.

[연구질문6]은 시민 대 공권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모욕발생 양상을 탐색한다. 경찰관에 대한 모욕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국가가 보다 직접적으로 담론권력을 행사하는 양상을 파악하고, 모욕죄가 시민의 저항권에 미치는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연구질문1] 모욕죄 사건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질문2] 모욕죄 사건에서 모욕매체와 모욕발언 내용은 어떠한가? 모욕발언 내용에 전통적으로 욕설이라고 간주할 만한 용어가 포함되었는가?
- [연구질문3]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에 따라 모욕매체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질문4]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 모욕매체에 따라 모욕발언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질문5]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 모욕매체, 모욕발언 내용과 유무죄 판결 간에 관련성이 있는가?
- [연구질문6] 경찰관에 대한 모욕 양상은 어떠한가? 경찰관에 대한 모욕 여부가 모욕발언 내용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연구방법

1) 분석대상의 설정

이 연구는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methodology of empirical legal studies)⁸⁾에 근거해, 국내 모욕죄 판례들을 연구 대상으로 수집하여,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바탕으로 모욕죄 판례들을 교차검토(cross-check)해가며 분석한다. 이 연구는 대법원이 2019년에 구축한 판결서 인터넷

8)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은 사회과학에서 활용하는 경험주의에 기반한 연구/조사방법이다(김성원, 2012).

열람 시스템을 사용해 판결문을 수집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모욕죄 단독사건 1심 판결문 7,364건을 모욕죄 사건 표집틀(sampling frame)로 설정했고, 이렇게 결정한 표집틀을 이용해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의 방법으로 총 505건의 1심 판결문을 추출했다.⁹⁾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을 모욕죄 단독사건에 한정했는데,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모욕죄 외에도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타범죄로 인한 잡음이 발생해 모욕죄가 작용하는 양상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체계적 표집은 전체 목록의 매 k번째 요소들이 표본에 포함되는 확률의 표집형태로, 모집단의 크기를 원하는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k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판결문 수집 단계를 살펴보면, (1)먼저 임의어 키워드로 ‘모욕’을 설정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모욕’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판결문을 검색했다. 법원 시스템은 1년 단위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로 1년 단위로 시기를 구분해서 임의어 검색을 한 결과, 총 27,461건의 ‘모욕’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판결문을 얻었다. 총 27,461건 판결문의 선고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심급, 사건명 정보를 법원 시스템으로부터 불러와서, 해당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했다.¹⁰⁾ (2)이들 중에서 사건명이 모욕죄 단독 사건인 판례 총 9,252건을 추려내고, (3)9,252건의 판결문에서 심급이 1심 판결문인 7,364건을 다시 추려내어 모욕죄 1심사건 전집을 규정하는 표집틀로 삼았다. 총 7,364건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표집의 방식으로 총 526건의 판결문을 추출했다. 526건에 대한 체계적 표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①7,364건의 판례를 선고일순으로 나열하고 표본번호를 1부터 7,364까지 순서대로 매긴 후, ②7,364를 최소 목표 표본수인 500으로 나눈 몫인 14 (소수점 이하 숫자 절사)를 구하고, ③1부터 14중 무작위로 하나의 숫자를 추출한 후, ④14를 더해 나가면서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표집해 총 526건의 판결문을 추출했다. (4)이 중 열람이 제한된 판결문, 비실명처리중인 판결문 등 일부 접근이 제한된 판결문 21건을 제외하고 총 505건의 판결문을 연구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

9) 505건의 사건 중 1심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은 384건, 2심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은 96건, 3심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은 25건이다.

10) 2019년 1월 14일 검색기준

2) 주요 변수의 구성과 측정

이 연구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 모욕매체, 모욕발언 내용, 법원 판결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Table 2>의 유목을 설정했다.

Table 2. Analysis Category

분석유목	내용
선고일자	판결을 선고한 일자
심급	최종적으로 확정된 심급이 1심, 2심, 3심 인지를 제시.
주문	재판의 최종 결과
모욕매체	피고인이 고소인을 모욕한 방식 (모욕채널)
인구사회학적 특성	피고인과 고소인의 성별 및 공인/사인 유형
사회적 관계	피고인과 고소인의 친분관계 및 위계관계
모욕발언 내용	모욕발언 내 욕설사용 여부
경찰관 대상 모욕	경찰관을 모욕한 경우

(1) 비판단코딩

가. 선고일자

모욕죄 판결이 선고된 확정일자를 코딩했다.

Table 3. Number of Insult Law Cases by Year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건수	94	118	110	94	89	505

나. 심급

심급의 경우, 1심에서 형이 확정된 사례, 2심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된 사례, 3심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사례를 코딩했다. 심급은 판결문에 명기되어 있어 연구자의 별도 판단이 필요치 않다. 사건 구분에 따라, 고단(형사1심 단독사건), 고정(약식 정재청구 1심 단독사건), 고택(형사1심 합의 사건)은 1심으로, 노(형사 항소사건)는 항소심으로, 도(형사 상고사건)는 상고심으로 코딩했다.

Table 4. Number of Insult Law Cases by Court

주요측정 변수	변수값	변수값 설명	건수	%
심급	1심	1심에서 형이 확정됨	384	76
	항소심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됨	96	19
	상고심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됨	25	5

다. 주문

주문은 각 사건의 최종 판결(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을 코딩했다. 유무죄 판결 결과 또한 판결문 내에 법원의 판단이 명기되어 있어 연구자의 별도 판단이 필요치 않다. (1)벌금형 (2)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 (3)기타의 세 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코딩했다.

Table 5. Number of Insult Law Cases by Final Judgement¹¹⁾

주요측정 변수	변수값	변수값 설명	건수	%
판결	벌금형	벌금형 받은 경우.	371 ¹²⁾	73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선고유예, 무죄, 고소취하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된 경우	123 ¹³⁾	24
	기타	징역, 징역/집행유예 등	11	2

(2) 판단코딩

2명의 연구원이 505건의 모욕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크리펜도르프 알파(Krippendorff's α)값을 기준으로 평균 .93을 얻었고, 연구원들 간의 일치도를 통해서 측정된 신뢰도 수준은 수용할만 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가장 낮은 항목에 대한 크리펜도르프 알파 값은 .83¹⁴⁾ 이다.) 2명의 연구원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상호논의를 통해 양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코딩했다.

가. 모욕매체

매체를 대면모욕, 온라인모욕, 기타매체모욕으로 코딩했다. 대면모욕이란 피고인과 고소인이 대면한 상태에서 발생한 모욕을 의미한다. 온라인모욕이란 피고인이 PC 를 통해 게시물 및 댓글을

11) 총 505건 중 상급법원에서 1심 판결이 변경된 사례는 총 28건으로 6%에 불과하다.

12) 10만원 4건, 15만원 1건, 20만원 7건, 30만원 53건, 50만원 74건, 60만원 1건, 70만원 61건(이중 1건은 1심에서 50만원, 2심에서 타범죄와 병합되어 70만원 선고받음), 80만원 5건, 100만원 86건, 150만원 26건, 200만원 51건 이다. 이외 2건은 두명 이상의 피고인들에게 상이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로, 각각 50만원/30만원, 100만원/50만원/70만원/30만원/20만원을 선고한 경우이다. (상급법원에서 타범죄와 모욕죄가 병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모욕죄만의 벌금 형량을 코딩했다. 모욕죄만의 벌금 형량을 코딩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타 변수값으로 코딩했다.)

13) 선고유예는 36건, 무죄는 22건, 공소기각은 64건이다. 이외 1건은 피고인의 복수의 모욕행위에 대해 각각 선고유예, 공소기각을 선고한 경우이다.

14) 연구원 간 신뢰도를 측정할 유목은 10개로 다음과 같다. (1)모욕매체($\alpha = 0.94$) (2)피고인 성별($\alpha = 0.9$) (3)피고인 공인/사인 유형($\alpha = 0.83$) (4)고소인 성별($\alpha = 0.93$) (5)고소인 공인/사인 유형($\alpha = 1$) (6)피고인과 고소인 간 친분관계($\alpha = 0.86$) (7)피고인과 고소인 간 위계관계($\alpha = 0.92$) (8)욕설사용($\alpha = 0.91$) (9)경찰대상모욕($\alpha = 1$) (10)사회상규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alpha = 1$)

올리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과 같이 인터넷 활동을 통해 발생한 모욕이다. 기타매체모욕은 대면모욕과 온라인모욕이 아닌 모든 모욕매체를 뜻하는 것으로 인쇄 출판물, 방송, 집회 등을 통한 모욕을 포괄한다.

Table 6. Number of Insult Law Cases by Medium

주요측정 변수	변수값	변수값 설명	건수	%
모욕매체	대면모욕	대면상태에서 발생한 모욕	384	76
	온라인모욕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진 모욕	104	21
	기타매체모욕	대면모욕과 온라인모욕을 제외한 모욕	17	3

나.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피고인과 고소인의 성별

피고인과 고소인의 성별을 측정했다. 성별이 판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결문에 기술된 내용 및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간 발언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성별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만을 집계했다. 예를 들어 판결문 내에 피고인의 처라는 표현을 통해 피고인이 남성임을 식별할 수 있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고소인의 성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는 사례만을 집계했다.¹⁵⁾

Table 7. Number of Insult Law Cases by Sex

주요측정 변수	변수값	변수값 설명	건수	%
피고인 성별	여	피고인이 여성인 경우	11	2
	남	피고인이 남성인 경우	19	4
	NA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475	94
고소인 성별	여	고소인이 여성인 경우	109	22
	남	고소인이 남성인 경우	44	9
	NA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352	70

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피고인과 고소인의 공인/사인 유형

공인/사인 유형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조해서 코딩했다. 현대적 공인이론은 미국에서 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1964))을 통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이 처음 적용된 이래로, 공인이 누구인지 정의내리는

15) 욕설이 “~년” 으로 고소인이 여성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욕설을 바탕으로 성별을 추정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놈”, “~새끼”, “~자식” 등의 욕설을 했을 경우 성별코딩하지 않았다. “~놈”, “~새끼”, “~자식” 등의 욕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쓰이지만, 예외적으로 여성을 향해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것은 명예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법원이 내린 공인에 대한 정교한 정의가 없으며 이로 인해 공인에 대한 판결은 있어도 법적으로 공인이 누구인지 명확치가 않다(손태규, 2013). 대법원 또한 공인이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고 있는데, 판결만으로 공인의 범주를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고, 과거 판결에서 공인으로 간주되었던 인물이 항상 공인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이재진·진승현, 2018).

이 연구는 이재진과 이창훈(2010)이 국내 공인분류 연구를 종합해 제시한 공인의 유형과 우리 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인, 공직자, 운동선수, 연예인, 기업인, 언론인, 언론사, 사회운동단체, 종교지도자, 범죄자, 피의자 등을 모두 공인으로 간주했다. 공직자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까지 공인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이승선(2007)의 경우는 하위직 공무원을 경계 영역적 인물로 보고 있다. 이 연구는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도 모욕발생 상황이 업무영역과 관련된 경우 공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서 일선 경찰관을 공인으로 코딩했다. 하나의 판례에 피고인이 다수이거나, 고소인이 다수인 경우가 존재했는데, 피고인이나 고소인의 공인/사인 유형이 동일한 경우 1건으로 코딩했다.

Table 8. Number of Insult Law Cases by Publicness

주요측정 변수	변수값	변수값 설명	건수	%	
피고인 공인/사인 유형	공인	피고인이 공인유형인 경우	316)	1	
	사인	피고인이 사인유형인 경우	502	99	
고소인 공인/사인 유형	공인	고소인이 공인유형인 경우	경찰관-공인	178	40
			비경찰관 공인 ¹⁷⁾	26	
	사인	고소인이 사인유형인 경우	290	57	
	NA	공인/사인 구분 어려운 경우 ¹⁸⁾	11	2	

라. 피고인과 고소인의 사회적 관계 #1: 피고인과 고소인의 친분관계

피고인과 고소인의 사회적 관계는 친분관계와 위계관계로 구분해서 측정했다. 먼저 친분관계의 경우 (1)친분이 존재하는 관계 (2)일방관계 (3)무면식관계 (4)불분명으로 구분했다. 친분관계란 피고인과 고소인이 모욕죄 사건 발생 이전에 상호 간에 일면식이 있거나 꼭 만나지 않았다고

16) 피고인이 각각 6급 공무원, 군공무원, 기자인 경우였다.

17) 비경찰관-공인 고소인은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연예인, 방송인, 시민운동가, 민간단체 등을 포함한다.

18) 고소인이 다수인데 공인과 사인 유형이 섞여 있는 경우이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친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뜻한다. 일방관계란 피고인만이 고소인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자면, 일반 시민과 유명 연예인, 일반 시민과 유명 정치인 간의 관계가 일방관계이다. 무면식관계란 피고인과 고소인이 모욕죄 소송 이전에 전혀 모르던 사이를 뜻한다. 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친분이라고 할만한 수준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무면식관계로 코딩했다. 판결문 내용을 통해서 소송당사자들 간의 친분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불분명으로 코딩했다.

Table 9. Number of Insult Law Cases by Acquaintance

주요측정 변수	변수값	변수값 설명	건수	%
피고인과 고소인간 친분관계	친분관계	양자간 면식이 있거나 면식에 준하는 관계임.	157	31
	일방관계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일방적 정보를 가짐.	28	6
	무면식관계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전혀 모름.	279	55
	NA	소송당사자들 간 친분관계가 불명확함.	41	8

마. 피고인과 고소인의 사회적 관계 #2: 위계관계

위계관계는 (1)피고인이 위계가 높음 (2)고소인이 위계가 높음 (3)피고인과 고소인 간 위계없음 (4)불분명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공인과 사인 간 관계의 경우, 모욕정황이 공무와 관련된다면 공인을 위계가 높은 것으로 처리했다.¹⁹⁾ 예를 들어,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 중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경우, 판결문 내에서 사인 피고인이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물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경찰관이 사인 피고인보다 위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인유형이긴 하지만 모욕죄 사건 정황이 공무와 관련 없거나, 공인유형이 사인유형보다 위계가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계없음으로 처리했다.

Table 10. Number of Insult Law Cases by Social Hierarchy

주요측정 변수	변수값	변수값 설명	건수	%
피고인과 고소인간 위계관계	피고인 위계높음	피고인이 고소인보다 사회적 위계가 높음.	9	2
	고소인 위계높음	고소인이 피고인보다 사회적 위계가 높음.	199	39
	위계없음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 사회적 위계가 없음	286	57
	NA	피고인과 고소인 간 위계가 불분명함.	11	2

19) 공인의 업무 관련해 모욕소송이 발생한 경우, 사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높은 것과 같은 특이사항이 아닌 한 공인이 사인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바. 경찰관 모욕

공권력에 대한 모욕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경찰을 모욕한 경우를 별도로 측정했다.

Table 11. Number of Insult Law Cases brought by Police Officers

주요측정 변수	변수값	변수값 설명	건수	%
경찰관 모욕	경찰관 대상 모욕	경찰관을 모욕한 경우	178	35
	비경찰관 대상 모욕	경찰관이 아닌 이를 모욕한 경우	322	64
	NA	경찰관/비경찰관 구분 불가한 경우 ²⁰⁾	5	1

사. 모욕발언 내용

모욕발언 내용은 욕설포함 여부로 측정했다. 욕설이 사용된 경우는 해당 주체의 변수값을 1로, 욕설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했다. 무엇을 욕설로 볼 것이냐는 개인의 언어에 대한 감수성 및 민감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자의 욕설 감수성에 따른 차이가 분석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Table 12>와 같은 전통적 욕설만을 욕설로 코딩했다.

Table 12. Range of Swear Words

(1) 놈, 년, 새끼, 씨, 좃/보지, 개, 병신, 심팔/시발/씩할, 지랄, 니미/지미 단독사용.
(2) 놈, 년, 새끼, 씨, 좃/보지, 개, 병신, 심팔/시발/씩할, 지랄, 니미/지미 접두사/접미사로 사용
(3) 놈, 년, 새끼, 씨, 좃/보지, 개, 병신, 심팔/시발/씩할, 지랄, 니미/지미와 유사 발음 사용

Table 13. Number of Insult Law Cases by Swearing

주요측정 변수	변수값	변수값 설명	건수	%
욕설사용	욕설사용	모욕발언 내 욕설을 사용한 경우	457	90
	욕설미사용	모욕발언 내 욕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48	10

5. 연구결과

1) 모욕죄 소송 당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

첫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인유형이 고소인이나 피고인인 비율이 높았지만, 공인유형 고소인의 비율(40%, 204건)이 공인유형 피고인 비율(1%, 3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 예를 들어, 피고인이 경찰관과 비경찰관을 동시에 모욕한 사례이다.

모욕죄가 우리사회에서 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²¹⁾

둘째, 피고인과 고소인이 일면식이 없는 무면식관계에서 모욕소송이 발생한 비율이 55%(279건)로 가장 높았고,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모욕소송이 발생한 비율은 31%(157건)로 나타났다. 공동체 예절이 친분관계가 약하거나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개인들 간의 상호존중의 예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면식관계에서 모욕죄 소송이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에 대해, 모욕죄 소송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 예절규범을 강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고소인이 피고인보다 위계가 높은 경우는 39%(199건)로 고소인이 피고인보다 위계가 낮은 경우인 2%(9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모욕죄가 우리 사회에서 위계가 높은 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2) 모욕매체와 모욕발언 내용

첫째, 모욕죄 소송 중 대면모욕 소송비율이 전체 분석 대상의 76%(38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모욕의 경우는 전체 분석 대상의 21%(104건)를 차지했고, 기타매체모욕의 경우는 3%(17건)에 불과했다. 이 연구에서 온라인모욕 소송비율이 대면모욕 소송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1) 온라인모욕의 경우 모욕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상의 무수한 사이트를 일일이 뒤져서 자신을 모욕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2)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이 온라인상의 모욕에 대해서는 대면모욕보다는 관용적 자세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모욕은 모욕이 발생한 시점과 모욕을 확인한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고, 모욕이 전달되는 중간과정에서 온라인매체를 거친다. 온라인모욕의 비즉각적이고 간접적인 발화형태가 모욕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모욕내용의 90%(457건)가 욕설을 포함했는데, 욕설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 소송이 발생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10%(48건)에 해당하는 사례는 욕설로 간주할 만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욕설을 사용하지 않고 모욕한 경우도 무례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욕설을 섞어 모욕한 경우 공동체 예절규범을 위반하는 강도가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욕설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 소송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공동체 예절규범에 대한 위반강도

21) 이 연구 결과는 사인유형 고소인인 경우가 290건, 공인유형 고소인인 경우가 204건으로 사인유형이 고소인인 경우의 건수가 더 많았지만,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사인유형과 공인유형의 모집단 수를 추정해본다면 사인유형의 모집단 수가 공인유형의 모집단 수보다 월등히 높을 것이다. 모집단 수를 고려할 때, 이 연구 결과의 사인유형의 고소인 수가 공인유형 고소인 수보다 높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가 공인보다 사인의 권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높을 때 모욕죄 소송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모욕죄 소송이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예절규범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3) 모욕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째, 피고인의 공인/사인 유형에 따른 모욕매체 간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²²⁾ 고소인의 공인/사인 유형에 따른 모욕매체 간 차이는 나타났다($\chi^2(df) = 28.86(2)$, $p < .001$). 고소인이 공인인 경우 사인인 경우보다 대면모욕 시 모욕죄 소송 발생률이 높았고, 온라인모욕과 기타매체 모욕했을 때 모욕죄 소송 발생률은 낮았다.

고소인이 비경찰관-공인인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검토했다. 고소인이 비경찰관-공인인 경우에도 공인/사인 유형에 따라 모욕매체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앞서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비경찰관-공인 고소인의 경우 사인인 경우에 비해 대면모욕소송의 비율이 낮았고($\chi^2(df) = 30.28(1)$, $p < .001$), 온라인모욕 소송의 비율은 높았다($\chi^2(df) = 25.11(1)$, $p < .001$). 비경찰관-공인이 사인보다 온라인모욕 소송의 고소인인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온라인의 전파성으로 인해 공인이 사인보다 온라인모욕에 민감하다는 기존 주장들을 뒷받침한다.

Table 14. Publicness * Medium Cross Tabulation

		대면	온라인	기타매체	전체
		n (%)	n (%)	n (%)	n (%)
고소인	사인	197 (67.9)	79 (27.2)	14 (4.8)	290 (100)
	공인	181 (88.7)	20 (9.8)	3 (1.5)	204 (100)

$\chi^2(df) = 28.86(2)$, $p < .001$.

Table 15. Publicness * Face-to-face/Untact Cross Tabulation

		대면	비대면	전체
		n (%)	n (%)	n (%)
고소인 (경찰제외)	사인	197 (67.9)	93 (32.1)	290 (100)
	공인	3 (11.5)	23 (88.5)	26 (100)

$\chi^2(df) = 30.28(1)$, $p < .001$. (경찰관 제외)

22) 피고인의 공인/사인 유형과 모욕매체 간 카이제곱검정은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 이상으로 카이제곱검정의 통계적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Table 16. Publicness * Online/Offline Cross Tabulation

		온라인	비온라인	전체
		n (%)	n (%)	n (%)
고소인	사인	79 (27.2)	211 (72.8)	290 (100)
(경찰제외)	공인	20 (76.9)	6 (23.1)	26 (100)

$\chi^2(df) = 25.11(1), p < .001$. (경찰관 제외)

둘째, 피고인과 고소인의 친분관계에 따른 대면/비대면 모욕 간 차이가 나타났다($\chi^2(df) = 137.1(2), p < .001$). 무면식관계인 경우, 양자 간 친분이 있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해 일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대면모욕소송이 발생한 빈도가 높았다. 모르는 사람을 대면 모욕한 경우 기준에 알고 있는 사람을 모욕한 경우보다 모욕죄 소송이 발생한 빈도가 높음을 뜻한다.

Table 17. Acquaintance * Face-to-face/Untact Cross Tabulation

		대면	비대면	전체
		n (%)	n (%)	n (%)
친분있음		110 (70.1)	47 (29.9)	157 (100)
일방		0 (0)	28 (100)	28 (100)
무면식		255 (91.4)	24 (8.6)	279 (100)

$\chi^2(df) = 137.1(2), p < .001$.

셋째, 모욕소송 당사자들의 위계관계에 따른 모욕매체 간 차이가 나타났다($\chi^2(df) = 60.86(2), p < .001$). 고소인이 피고인보다 위계가 높은 경우, 고소인이 피고인보다 위계가 높지 않은 경우보다 대면모욕 비율이 높고 온라인모욕 비율은 낮고 기타매체모욕 비율은 비등했다. 경찰관 고소인을 제외했을 때 모욕소송 당사자들의 위계관계에 따른 모욕매체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²³⁾

Table 18. Social Hierarchy * Medium Cross Tabulation

		대면	온라인	기타매체	전체
		n (%)	n (%)	n (%)	n (%)
고소인의 위계가 높지 않음		190 (64.4)	96 (32.5)	9 (3.1)	295 (100)
고소인의 위계가 높음		185 (93)	7 (3.5)	7 (3.5)	199 (100)

$\chi^2(df) = 60.86(2), p < .001$.

23) 경찰관 고소인을 제외했을 때, 위계관계에 따른 모욕매체 간의 카이제곱검정은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 이상으로 카이제곱검정의 통계적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4) 모욕발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째, 피고인의 공인/사인 유형에 따른 욕설사용 여부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²⁴⁾ 고소인의 공인/사인 유형에 따른 욕설 사용 여부 간 차이는 나타났다($\chi^2(df) = 8.27(1), p < .01$). 공인에 게 욕설한 경우 사인에게 욕설한 경우보다 모욕죄 소송이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는 모욕죄 소송이 사인보다 공인에 대한 예절을 더 많이 강제하며, 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 경찰관이 고소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²⁵⁾

Table 19. Publicness * Swearing Cross Tabulation

	욕설사용 n (%)	욕설비사용 n (%)	전체 n (%)
고소인 사인	252 (86.9)	38 (13.1)	290 (100)
고소인 공인	194 (95.1)	10 (4.9)	204 (100)

$\chi^2(df) = 8.27(1), p < .01$.

둘째, 피고인과 고소인의 친분 여부에 따른 욕설사용 여부 간 차이를 발견했다($\chi^2(df) = 13.5(1), p < .001$). 양자간 친분이 없는 경우 욕했을 때 모욕죄 소송이 발생한 빈도가 높았다.

Table 20. Acquaintance * Swearing Cross Tabulation

	욕설사용 n (%)	욕설비사용 n (%)	전체 n (%)
친분있음	132 (84.1)	25 (15.9)	157 (100)
친분없음	291 (94.8)	16 (5.2)	307 (100)

$\chi^2(df) = 13.5(1), p < .001$.

셋째, 고소인의 위계에 따른 욕설사용 여부 간 차이가 나타났다($\chi^2(df) = 11.26(1), p < .001$). 위계가 높은 고소인에게 욕설한 경우, 고소인의 위계가 높지 않은 경우보다 모욕죄 소송

24) 경찰관-공인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고소인의 공인/사인 유형과 욕설사용 여부 간의 카이제곱검정은 기대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으로 카이제곱검정의 통계적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사인-고소인이 욕설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252건, 38건, 비경찰관-공인 고소인이 욕설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18건과 8건이었다.)

25) 경찰관-공인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고소인의 공인/사인 유형과 욕설사용 여부 간의 카이제곱검정은 기대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으로 카이제곱검정의 통계적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사인-고소인이 욕설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252건, 38건, 비경찰관-공인 고소인이 욕설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18건과 8건이었다.)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모욕죄가 사회적 약자보다는 사회적 강자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 고소인이 경찰관인 경우를 제외했을 때는 고소인의 위계에 따른 욕설사용 여부 간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²⁶⁾

Table 21. Social Hierarchy * Swearing Cross Tabulation

	욕설사용 n (%)	욕설비사용 n (%)	전체 n (%)
고소인 위계높음	191 (96)	8 (4)	199 (100)
고소인 위계높지 않음	255 (86.4)	40 (13.6)	295 (100)

$\chi^2(df) = 11.26(1), p < .001.$

다섯째, 모욕매체와 욕설 사용간의 관련성을 탐색했다. 대면모욕 여부에 따른 욕설사용 간 차이가 나타났다($\chi^2(df) = 32.34(1), p < .001$). 대면모욕이 비대면모욕에 비해 욕설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 소송이 발생한 빈도가 높았다.

Table 22. Face-to-face/Untact * Swearing Cross Tabulation

	욕설사용 n (%)	욕설비사용 n (%)	전체 n (%)
대면모욕	364 (94.8)	20 (5.2)	384 (100)
비대면모욕	93 (76.9)	28 (23.1)	121 (100)

$\chi^2(df) = 32.34(1), p < .001.$

온라인모욕 여부에 따른 모욕내용 간 차이가 나타났다($\chi^2(df) = 13.01(1), p < .001$). 온라인모욕의 경우 비온라인모욕보다,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욕죄 소송 비율이 높았다.

Table 23. Online/Offline * Swearing Cross Tabulation

	욕설사용 n (%)	욕설비사용 n (%)	전체 n (%)
온라인모욕	84 (80.8)	20 (19.2)	104 (100)
비온라인모욕	373 (93)	28 (7)	401 (100)

$\chi^2(df) = 13.01(1), p < .001.$

26) 경찰관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원고의 위계와 욕설사용 여부 간의 카이제곱검정은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 이상으로 카이제곱검정의 통계적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경찰관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원고의 위계가 높으며 욕설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15건과 6건, 원고의 위계가 높지 않으며 욕설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255건, 40건이었다.)

5)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법원판결은 국가권력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욕죄 소송 당사자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 모욕매체, 모욕내용이 모욕죄를 통한 권력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 첫째, 공인/사인 유형에 따른 판결간 차이를 검토했다. 피고인의 공인/사인 유형에 따른 판결 간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²⁷⁾ 고소인의 공인/사인 유형에 따른 판결 간 차이는 나타났다($\chi^2(df) = 29.51(1)$, $p < .001$). 고소인이 공인인 경우 고소인이 사인인 경우보다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모욕죄 소송이 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소인이 경찰관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4. Publicness * Judgement Cross Tabulation

	공소기각/선고유예/무죄 n (%)	벌금 n (%)	전체 n (%)
고소인 사인	98 (34.4)	187 (65.6)	285 (100)
고소인 공인	24 (12.1)	174 (87.9)	198 (100)

$\chi^2(df) = 29.51(1)$, $p < .001$.

둘째, 친분관계에 따른 판결 간 차이가 나타났다($\chi^2(df) = 14.15(2)$, $p < .001$). 무면식 관계의 경우, 친분이 있거나 일방관계에 비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는 빈도가 높았다. 경찰관이 고소인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이러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5. Acquaintance * Judgement Cross Tabulation

	공소기각/선고유예/무죄 n (%)	벌금 n (%)	전체 n (%)
친분있음	49 (32.2)	103 (67.8)	152 (100)
일방	9 (33.3)	18 (66.7)	27 (100)
무면식	47 (17.2)	227 (82.8)	274 (100)

$\chi^2(df) = 14.15(2)$, $p < .001$.

셋째, 고소인의 위계에 따른 판결 간 차이가 나타났다($\chi^2(df) = 34.01(1)$, $p < .001$). 고소인이 위계가 높은 경우 고소인의 위계가 높지 않은 경우보다 벌금형의 유죄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모욕죄가 사회적 약자보다 사회적 강자의 권익 보호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27) 피고인의 공인/사인 유형과 판결 간의 카이제곱검정은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 이상으로 카이제곱검정의 통계적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있음을 보여준다. 고소인이 경찰관인 경우를 제외했을 때 이러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6. Social Hierarchy * Judgement Cross Tabulation

	공소기각/선고유예/무죄 n (%)	벌금 n (%)	전체 n (%)
고소인 위계 높음	20 (10.4)	173 (89.6)	193 (100)
고소인 위계높지 않음	99 (34.1)	191 (65.9)	290 (100)

$\chi^2(df) = 34.01(1), p < .001.$

넷째, 모욕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검토했다. 먼저 욕설사용 여부에 따른 판결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했다. 욕설사용 여부에 따른 판결 간 차이가 나타났다($\chi^2(df) = 14.66(1), p < .001$). 욕설을 사용한 경우 욕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는 빈도가 높았다.

Table 27. Swearing * Judgement Cross Tabulation

	공소기각/선고유예/무죄 n (%)	벌금 n (%)	전체 n (%)
욕설사용	100 (22.4)	347 (77.6)	447 (100)
욕설 비사용	23 (48.9)	24 (51.1)	47 (100)

$\chi^2(df) = 14.66(1), p < .001.$

다섯째, 욕설을 사용하지 않은 모욕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구체적인 모욕내용을 검토했다. 총 505건 중 욕설을 사용하지 않은 모욕은 48건으로 전체사례의 10%였다. 48건 중 공소기각/선고유예/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23건, 유죄판결(벌금/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25 건이었다. 전체 48건의 사례들 중 대표적인 사례 10건을 <Table 28>로 제시했다.

욕설을 사용한 경우의 평균 벌금액수 91만원으로 욕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평균 벌금액수 59만원보다 32만원 높게 나타났다. 모욕내용에 욕설을 포함했을 경우의 모욕죄 벌금과 욕설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의 모욕죄 벌금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 = 3.84, df = 28.68, p < .001$ 로 양자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욕설을 사용해 모욕한 경우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음을 의미한다.

Table 28. Content and Judgement of Insult Law Cases without Swear Words

법원	사건번호	매체	내용	최종 판결 ²⁸⁾
수원지법	2014고단5167	대면	“너 절도했지 문 떼어다가 어디다 팔아먹었어”	20만원
안양지원	2014고정1021	대면	“너 꽃뱀이지”	선고 유예
대구지법	2015고정379	온라인	“미친왕장 난 저런 마인드론 서비스업 안한다, 정말 당장 눈앞에 있는 돈에 미친 사람인가마냥”	30만원
의정부지법	2015고정1565	대면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무죄
안산지원	2015고정1796	대면	“야 돼지머리야”	70만원
성남지원	2017고정821	온라인	“정말 말종이군요”	선고 유예
서울서부지법	2013고정1582	대면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전문 사기꾼이다.”	30만원
성남지원	2015고정57	대면	“사기꾼 아니냐? 사기꾼 영업집이지!”	30만원
성남지원	2017고정636	대면	“이 사기꾼아, 사기치고 다니지 마”	선고 유예
수원지법	2017고정2057	온라인	“제일 버러지 같으신 분이 저희를 많이 웃겨주셔서 참 감사인사 전하고 싶어요.”	선고 유예

여섯째, 비경찰관-공인 대상 모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했다. 고소인이 공인 유형인 경우가 204건이었는데, 이중 경찰관-공인 고소인을 제외한 비경찰관-공인 고소인의 모욕소송 건수는 26건이었다. 26건중 대표적 사례 10건에 대해 모욕의 구체적 내용, 법원의 판결을 <Table 29>로 제시했다.

Table 29. Judgement of Insult Law Cases brought by Public Figure (Non-Police Officers)

법원	사건번호	매체	고소인	내용	최종 판결
통영지원	2013고정 202	온라인	고위 공직자	“E OO△△은 거짓말쟁이”, “오리발에, 거짓말...E △△ 도덕성 상실, 정신나간 OO△△ (...)”	200만원
부산지법	2013고정5426	대면	공무원	“당신은 공무원 자격도 없다. 싸발 좇갈네”, “에이, 짐승같은 놈, C 개새끼야, 너는 사람도 아니다, 당신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100만원
서울남부지법	2014고정1522	온라인	시민운동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게시물에 “개미친년”이라는 댓글 작성.	50만원
대구지법	2014고정1873	대면	공무원	“당신은 조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당신 약 먹었어요. 아저씨. 이 사람이 이거 112 신고해야겠네. 하는 짓이 이게 뭐니까. 민원인한테. 이거 또라이도 아니고 희한한 양반이네.” 등	100만원
부산지법	2014고정5125	온라인	유가족	“(…)막말하고 정부탓만 해대던 인간이 이 인간이었구만.. 저런 인간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70만원

28) 1심 사건이 항소 혹은 상고된 경우 최종심의 판결 결과를 코딩했다.

법원	사건번호	매체	고소인	내용	최종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고정443	온라인	언론사 및 기자	"사용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E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등등	무죄
부산지법	2015고정2160	기타	교육재단 임원	"너은 학교에 투자는커녕 학교 시설 및 복지 자금을 약탈하는 악질 기업가입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돈 버는 파렴치한 사립입니다"	무죄
대구지법	2016고정378	온라인	방송인	"(...) D은 존망예정인 듯 보인다 영리하게 아니라 즐라 교활하고 음흉한 인간임(...)"	50만원
안산지원	2016고정431	온라인	국회의원	"MBC 뉴스데스크 메인 뉴스로 적극추천함·화면 가득히 봄날은 간다~~~ C.. D 두 미친놈들 저런게 국회의원이라니 (출처)MBC 뉴스"	30만원
군산지원	2016고정451	온라인	기자	"D 신문 기자 씹쓰레기 인성, 기레기새끼", "쓰레기기자"	60만원

일곱째, 비경찰관에게 모욕발언을 했을 때, 모욕내용에 따른 벌금형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벌금형 20만원 이하(최저 10만원)인 경우와 벌금형 200만원(최고형)인 경우의 모욕내용을 비교했다. 경찰관 모욕이 아닌 경우, 벌금형 20만원 이하를 받은 사례는 총 12건이었고, 벌금형 200만원을 받은 사례는 총 13건이었다. 각각의 사례 10건을 <Table 30>과 <Table 31>로 제시했다. 벌금 20만원 이하의 모욕내용과, 벌금 200만원 모욕내용들 사이에 뚜렷한 모욕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Table 30. Content of Insult Law Cases brought by Non-Police Officers (Fine under 200,000 Won)

법원	사건번호	매체	내용	최종 판결
안산지원	2013고정388	대면	"야 그 회장 불러 미친놈아!,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야 공사 못 따서 개지랄이나 이 새끼야"	20만원
서울중앙지법	2013고정1116	대면	"야 그러면 이걸 내가 만들어 왔냐, 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 얼굴 쳐다보기도 싫다, 사기꾼 같은 놈"	20만원
서울중앙지법	2013고정5637	대면	"저 놈은 사기꾼이다. 너는 무고죄로 감옥 간다.", "인간이 아니다"	20만원
서울동부지법	2014고정4	대면	"아이그 요놈의 새끼야, 니가 남의 집 짓는데 왜 나와서 지랄이나(...)"	15만원
수원지법	2014고단5167	대면	"너 절도했지 문 떼어다가 어디다 팔아먹었어"	20만원
부산지법	2016고정1392	대면	"에이 사발 좆갈네, 니미 사발거 무슨 욕을 그렇게 하소", "야 사발놈아 욕좀 그만 해라, 니도 욕할 줄 안다" 등	10만원
수원지법	2016고정1306	대면	"쌍년, 못된년, 절대 여기 개판 쳐서 안돼, 술 퍼먹고 개지랄하고 쌍년이지" 등등	20만원
강릉지원	2016고정120	대면	"쌈할 새끼가, 도둑놈의 새끼야, 아이고, 쌈할 도둑질하고 개인택시 산 거 아놔야, 좆같은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20만원
서울중앙지법	2017고정298	대면	"꽃뱀 나와라! 쌈할년! 우리집 재산을 수십억씩 계속 말아먹은 꽃뱀년!" 등	20만원
서울서부지법	2017고정870	대면	"사기꾼", "B 이 새끼야, 사기꾼아, 저 사기꾼 꿈쩍도 안 해."	10만원

Table 31. Content of Insult Law Cases brought by Non-Police Officers (Fine 2,000,000 Won)

법원	사건번호	매체	내용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2고정585	대면	“개새끼야, 십새끼야, 니 좃대로 해라. 너희들 한번 죽어 볼래, 개새끼야 나이 많으면 죽어라”
마산지원	2012고정629	온라인	“그들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닙니다.(...)” 등등
통영지원	2013고정202	온라인	“E O O Δ Δ 은 거짓말쟁이”, “오리발에, 거짓말...E Δ Δ 도덕성 상실, 정신나간 O O Δ Δ (...)”
서울중앙 지법	2013고정6758	대면	“쌌할년아, 뒤질래, 죽여버린다”, “씨팔년아, 좃같은 년아, 니랑 한번 사귀자”
부천지원	2014고정896	대면	“이 새끼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쌌할 놈, 너 같은 놈도 남자새끼라고, 야후, 새끼야”, “저 둘대가리, 쌌할 놈, 개새끼” 등등
의정부 지법	2014고정2392	온라인	“(…) 목포, 군산 등지에서 상경한 흥어들의 아지트 아나 짜 (...)”
수원지법	2014고정3483	온라인	“그 늙은 년은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개가 물어뜯다 놓쳐 뒤질 년” 등등
서울동부 지법	2015고정1893	대면	“개새끼, 씹새기, 병신새끼”
의정부 지법	2016고정339	대면	“야 쌌할놈아, 좃만한 새끼야, 문 열어 달라고 두드렸는데 그걸 못 열어줘, 쌌놈의 새끼야!”
의정부 지법	2016고정199	대면	“쌌발년아, 너희들은 청평에 못 온다. 이 쓰레기 같은 년아, 씨발년아, 너 같은 년하고 사는 신랑이 불쌍하다”

끝으로, 모욕내용에 다른 무죄판결 및 무죄판결 사유를 검토했다. 총 505건 중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는 22건으로 무죄비율은 4%였다. 모욕 수준이 경미하다거나 모욕발언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고소인의 진술 일관성 부족, 공연성 없음, 증거 없음 등의 사유가 무죄의 주요한 사유로 작용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적 사례 10건을 <Table 32>로 제시했다.

Table 32. Judgement of Acquittal

법원	사건번호	매체	내용	주요 판결사유
서울북부 지법	2014고정1372	대면	“지능이 떨어져 대화가 되지 않는다. 합의 불성립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증거부족
광주 지법	2013고정2518	대면	“힘만 있으면 너 같은 놈 때려 죽이겠다. 사람 새끼도 아니다. 경찰 새끼 검사 새끼 누가 알려줬어”	진술 일관성 부족
의정부 지법	2015고정1565	대면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공연성없음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고정1345	온라인	“벌레 잡으러 왔습니다.”	피해자 특정 안됨
서울동부 지법	2016고정164	기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 D를 “포라이”로 지칭한 문자메시지가 포함된 전단을 부착 및 게시	모욕의 범의 없음
인천 지법	2016고정1436	온라인	“(…) 온갖 거짓과 유언비어 및 상식에 어긋난 행동으로 (...)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으니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모욕행위로 보기 부족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

법원	사건번호	매체	내용	주요 판결사유
광주지법	2016고정1913	대면	"(...) B씨 부모님을 한 번 보고 싶다, B씨를 이렇게 키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법	2015고정2430	대면	"개같은..."	공연성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2882	기타	"이러한 난동을 부리는 우리들도, 부녀회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OOO에 해를 끼치는 모임이 부녀회인가요, 자중해주십시오"	증거가 없고 죄가 되지 않음
서울동부지법	2017고정1051	대면	"개새끼 비빠 죽겠는데 지랄하고 있네"	증거부족 및 정당행위에 해당

6) 경찰관에 대한 모욕 양상

경찰관 모욕죄는 국가공권력 대 시민이라는 특수구도에서 발생한 모욕죄 사건이다. 공권력이 단순권력을 행사하는 양상을 파악하고, 모욕죄가 시민의 저항권에 미치는 함의를 탐색했다. 첫째, 경찰관 대상 모욕 여부에 따른 욕설사용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했다. 공권력에 대한 모욕과 욕설사용 간에 관련성이 나타났다($\chi^2(df) = 18.75(1), p < .001$). 경찰관을 모욕하며 욕설을 사용한 경우 사인에게 욕설한 경우보다 모욕소송이 발생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욕죄가 공권력에 대한 예절위반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Table 33. Publicness (Police Officer) * Swearing Cross Tabulation

	욕설사용 n (%)	욕설비사용 n (%)	전체 n (%)
사인	252 (86.9)	38 (13.1)	290 (100)
경찰관 공인	176 (98.9)	2 (1.1)	178 (100)

$\chi^2(df) = 18.75(1), p < .001$.

둘째, 경찰관 대상 모욕 여부에 따른 판결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했다. 경찰관에 대한 모욕과 판결 간에 관련성이 나타났다($\chi^2(df) = 33.24(1), p < .001$). 경찰관은 공인인 동시에 공권력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사인과의 관계에서 위계의 우위를 점한다. 고소인이 경찰관인 경우 사인을 모욕한 경우보다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모욕죄가 공권력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Table 34. Publicness (Police Officer) * Judgement Cross Tabulation

	공소기각/선고유예/무죄 ²⁹⁾	벌금	전체
	n (%)	n (%)	n (%)
사인	98 (34.4)	187 (65.6)	285 (100)
경찰관 공인	17 (9.8)	156 (90.2)	173 (100)

$\chi^2(df) = 33.24(1), p < .001.$

셋째, 경찰관을 모욕했을 때, 모욕내용에 따른 벌금형 수준을 검토했다. 경찰관에 대한 모욕내용이 사인에 대한 모욕내용보다 모욕강도가 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지만, 경찰관 모욕에 대한 평균 벌금액수는 115만원으로, 사인에 대한 평균벌금액수 66만원보다 49만원 높게 나타났다. 경찰관 대상 모욕죄 벌금과 사인 대상 모욕죄 벌금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 = 9.34, df = 299.6, p < .001$ 로 양자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경찰관을 모욕한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의 경우 최소벌금액이 10만원이었던 반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의 경우 최소벌금액이 30만원으로 3배 높았다. 경찰관을 모욕한 경우 벌금 50만원 이하(최소 벌금: 30만원)를 선고받은 사례가 총 20건이었고, 벌금200만원(최고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총 35건이었다. 이중 각각의 대표적 사례 10건을 <Table 35>와 <Table 36>으로 제시했다. 앞서 사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 소송사례들 중에서 벌금 20만원 이하의 모욕내용과, 벌금 200만원 모욕내용들 사이에 뚜렷한 모욕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웠듯이, 경찰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 소송사례들 간에도 벌금 50만원 이하의 모욕내용과 벌금 200만원의 모욕내용들 사이에서 뚜렷한 모욕강도의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Table 35. Content of Insult Law Cases brought by Police Officers (Fine under 500,000 Won)

법원	사건번호	매체	내용	벌금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2고정1690	대면	“씨발, 휴대폰 찾아와”, “뿔뿔, 임마”, “야 새끼야, 죽을래, 가 임마”, “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50만원
부산지법	2012고정5608	대면	“뭘 술먹고 왔지 이새발놈야”, “우썰건데”, “시발놈야, 아이구 등신들이 시발. 시발 짜증나. 야 공익요원이나 장난하나. 뭐하는 새끼야. 진짜 시발. 뭐하는 거야 임마 지숙들야. 니 좆대로 함 보까 진짜 좆대로 해볼래 시발.”	50만원
광주지법	2013고정1473	대면	“씹할새끼들이 너희들은 사람새끼들도 아니다 너희들이 경찰이나.. 인간도 아닌 새끼들이다 씹할놈야” 등	50만원

29) 무죄 판결 사례 중 고소인이 경찰관인 경우는 없었다.

법원	사건번호	매체	내용	벌금
전주지법	2013고정659	대면	“새발 좇같이, 이 개새끼들아, 이 새발놈들, 그들 모가지를 잘라버려, 색어빠진 경찰놈들”	50만원
광주지법	2014고정248	대면	“야 새발놈들아,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아, 새발놈들아, 에이 개새끼, 새발새끼야, 나가기만 해봐라, 너희 식구들을 몰살해버린다”	50만원
서울북부지법	2014고정541	대면	“쌍놈의 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새가지가 없다, 니가 경찰관이나, 모가지를 자르겠다”	50만원
부천지원	2015고정150	대면	“신고해 이 새발놈아, 이새끼가 뭐하는거야, 행패를 부릴만하니까 행패를 부리지 이 씨새끼야”	50만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5고단2100	대면	“이 새발 좇갈네. 이 새발 새끼야, 일을 그 따위로 처리해. 이 새발새끼야,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해. 나중에 한 번 두고 보자.”	50만원
서울북부지법	2016고정402	대면	“새발 새가지가 없는 친구네, 새발놈, 이 새끼 완전 엉망이네.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 의경이나, 이름을 까라, 새발놈아, 넌 내가 유치장 보낼 거야 새발”, “새발놈아”	30만원

Table 36. Content of Insult Law Cases brought by Police Officers (Fine 2,000,000 Won)

법원	사건번호	매체	내용
청주지법	2013고정686	대면	“야, 새발 새끼야, 새발 좇카고 있네”, “새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새발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차에 태우려고 하느냐”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고정188	대면	“꺼져 이 새끼야 그럼 가 이 씨새끼야”
서울북부 지법	2014고정2903	대면	“이 새발놈아, 개 새끼야, 아까 나에게 스티커 끊은 새끼 누구야, 너지, 이 새발놈아, 이 새발놈아, 아까 나가 나에게 스티커를 끊었잖아(...)”
안양지원	2014고정1093	대면	“야 새발 내 얘기가 인들리냐, 새발놈들 이건 강압수사 아니냐, 다 동영상 찍어버릴거야 새발”
대전지법	2015고정8	대면	“좇가는 소리 하지말고, 야 새발놈아, 왜 왔는데 왜 왔어, 너는 뭔데 새발, 경찰이 넷이 와서 강패여? 아이구 새발, 그지같은 놈들, 그지들”
안산지원	2015고정98	대면	“야 씨할놈들아, 짹새 새끼들아”
인천지법	2016고단3429	대면	“경찰이 쓰러기네, 너 이름 뭐냐 이상한 새끼네, 야이 개새끼야, 씨할 새끼야, 넌 아가리 닥쳐, 민주경찰야”
서울동부 지법	2016고단1253	대면	“짹새 새끼들 꺼져. 나 짹새 싫어하거든, 짹새, 좇같은 새끼야, 씨새끼”
창원지법	2016고단2911	대면	“야 이 새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보고 집에 가라미라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고정1122	대면	“새발년! 너 같은 년이 경찰관아니! 돈 받아서 경찰됐년! 야이 한심한 년아! 너 몇 살이나 개 같은 년!”

6.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총 505건의 판례분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한 점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사회의 모욕죄 소송과 공인의 권익 보호 간에 관련성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욕죄가 공인 유형 중 특히 경찰관-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비경찰관-공인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

성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는데, 후속연구를 통해 비경찰관-공인에 대한 추가적 데이터를 수집해 모욕죄 소송과 비경찰관-공인의 권익 보호간의 관련성에 대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공인이 모욕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발언의 자유를 위협하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 및 공적 토론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적 토론을 하다보면 날카롭고 공격적인 표현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화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공적 토론의 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판시한 ‘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행 모욕죄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이러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버린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경향이 높는데,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인의 지위를 완전히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김준호, 2017).

클루니와 웹(2017)은 다수의 국가들이 통치자에 대한 비판을 규제하기 위해, 명예훼손법(defamation laws), 선동법(sedition), 반차별법(anti-discrimination laws), 테러리즘법-terrorism laws), 가짜뉴스법(fake news laws), 공공질서법(public order laws), 기타 발언과 전혀 관련 없는 법률들을 동원해서 시민들의 발언을 제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다양한 법제도를 동원해 제재하려 한다는 클루니와 웹의 관찰은 우리 사회에서도 고찰해볼 가치가 있다. 법을 동원해 부적절한 발언을 제재하려는 시도들의 이면에, 사회적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려는 숨겨진 3차원적 권력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욕죄 소송이 사회적 위계가 낮은 이의 발언의 자유를 제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모욕죄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사회적 약자의 저항권을 더욱 약화시키는 3차원적 권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모욕죄가 사회적 기득권의 권익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존 모욕죄 논의들을 뒷받침한다. 모욕죄 소송의 35%가 특히 경찰관 대상 모욕이었고, 경찰관을 모욕한 경우 처벌의 강도 또한 더 높았는데, 이는 모욕죄를 통해 결과적으로 공권력이 시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욕죄가 공권력에 대한 예절을 강제하는 담론권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성기(2014)에 따르면 시민이 경찰관을 모욕하는 것을 형사처벌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1)경찰이 공권력 강화를 위해 공직자에 대한 조롱, 비판을 모욕죄로 형사처벌 한다면, 이는 공무원해방해죄 구성요건을 극복하기 위해 모욕죄를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개인적 법익을 국가적 법익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2)경찰관 모욕죄는 시민들의 민원제기, 불공정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치안서비스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3)경찰관 자신이 모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 개인감정에 기반해 체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체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버틀러가 주장했듯이 국가에게 양도된 은폐된 담론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4)사건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경우, 온라인에서의 모욕행위와는 달리 명예훼손의 과급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벌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성기(2014)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모욕죄 관련 진정사건들의 유형들을 제시했는데,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항의 과정 중 모욕행위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이 모욕행위를 도발한 경우, 경찰관이 모욕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다. 진정사례들의 예시를 통해, 이성기는 (1)경찰관이 모욕내용이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2)경찰관 대상 모욕죄 사건들에서 경찰관이 모욕행위를 먼저 도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불친절한 민원응대에 대해 민원인이 욕설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3)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권력을 모욕한 것에 대한 처벌은 국가의 담론권력 행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이 공권력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 지를 규정하는 적극적인 국가개입이다. 일선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법집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물론 지양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모욕죄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모욕을 처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형성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사례들이 있어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공권력 사용에 대해 민감하거나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것이다 (김중요·이대성, 2009). 공권력 행사에 있어 인권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경찰관들은 일선에서 정당한 법집행을 할 때에도 인권을 의식해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역사적,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모욕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 중 접할 수 있는 도를 넘는 조롱과 경시를 제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경찰을 모욕한 상당수의 사례들 속에서도, 일반시민들의 경찰관에 대한 도를 넘어서는 조롱과 경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약화된 공권력의 문제를 그렇지만 시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규제하는 모욕죄를 통해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발생한 욕설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경찰관 개인의 인격권 침해로 간주해 모욕죄로 처벌한다면, 국가의 법집행을 비판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시민적 저항권을 약화시키고 다수의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으며, 공권력에 대해 존중을 표하고 공권력에 순응하는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3차원적 권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욕설을 사용하거나 모르는 이를 모욕한 경우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모욕죄가 공동체 예절규범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짹새’, ‘사기꾼’, ‘꽃뱀’, ‘성괴’, ‘벌레’, ‘양아치’, ‘망나니’, ‘말종’, ‘버러지’ 등과 같이 일상에서 쉽사리 사용하는 비속어들을 사용했을 때도 모욕죄 소송이 발생했고, 이중 일부는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표현 방식이 공격적이거나 성적 암시 등을 포함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예의 없거나 교양 없는 발언을 한 경우, 상대의 외모를 조롱한 경우 등도 모욕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며, 이중 일부는 실제로 모욕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우리가 일상적인 갈등상황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거칠고 무례한 말들의 대다수가 모욕죄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모욕죄를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성 및 시민적 자율권과 연관시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모욕죄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일상 속 언어표현의 광범위한 영역이 모욕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권력이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침투해 발언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공동체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형국인 셈이다. 비록 과격하고 불쾌하고 무례한 극단적 발언이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장점을 향유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비용일 수 있다.

References

- Austin, J. L. (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aker, C. E. (1989). *Human liberty and freedom of spee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ker, C. E. (2011). Autonomy and free speech. *Constitutional Commentary*, 27(2), 251-282.
- Butler, J. (1997).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 Chang, K.-H. (2010). The nature and types of Korean abuses. *Textlinguistics*, 29, 401-427.
- Clooney, A., & Webb, P. (2017). The right to insult in international law.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48(2), 1-55.
- Dworkin, R. (2006). Forward. In I. Hare & J. Weinstein (Eds.), *Extreme speech and democracy*. (pp. v-i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eyman, Steven J. (2010). Hate speech, public discourse, and the first amendment. In I. Hare & J. Weinstein (Eds.), *Extreme speech and democracy* (pp. 158-18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S. Y. (200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buse in Korean. *Speech and Discourse Analysis*, 4, 271-290.
- Kim, J. H., & Lee, D. S. (2009). Study on the crisis of constitutional state and incapacitation of public power -focusing on analyzing actual examples.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15(3), 83-112.
- Kim, S. Y. (2012). A study on empirical legal studies as analytical tools for international law.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7(4), 87-112.
- Kim, J. H. (2017). Is the president a public figure in defamation law? - a critical review of three judicial cases focusing on the coverage of the theory of public figures. *The Justice*, 254-280.
- Lee, S.-S. (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efamation lawsuits sued by public figures. *Broadcasting & Communication*, 8(1), 96-131.
- Lee, J.-J., & Lee, C. (2010). A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courts and the press in the category of public figure and its standard of proof.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8(3), 235-286.
- Lee, S.-K. (2014). A review of criminality on the criminal contempt against police officers. *Han Yang Law Review*, 25(4), 419-441.
- Lee, J. J., & Jin, S. (2018). Understanding of Korean journalists and the media on public figure in Korea. *Journal of Media Law*, 17(1), 1-50.
- Lukes, S. (1974). *Power: A radical view*. London: Macmillan.

- Park, K. S. (2009). The unconstitutionality of insult laws and cyber-insult laws. *Korea Law Review*, 52, 263-299.
- Park, K. S., & Kim, K. (2011).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nsult law and a constitutional critique of its application by courts. *Journal of Media Law*, 10(2), 441-467.
- Post, R. (2009a). Interview with Robert Post. In M. Herz & P. Molnar (Eds.),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pp. 11-3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st, R. (2009b). Hate speech. In I. Hare & J. Weinstein (Eds.), *Extreme speech and democracy* (pp. 123-13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hee, J. W. (2009). Civility, power and strategies in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4), 395-417.
- Rhee, J. W. (2011). *Language and power*. Paju: Han Gil Sa.
- Son, T. G. (2013). Is the clergy a public figure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public figure doctrine of liability? *Public Law*, 42(4), 253-284.
- Waldron, J. (2012). *The harm in hate speec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einstein, J., & Hare, I. (2009). Global introduction: free speech, democracy, and the suppression of extreme speech past and present. In I. Hare & J. Weinstein (Eds.), *Extreme speech and democracy* (pp. 1-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man, J. Q. (2000). Enforcing civility and respect: Three societies. *The Yale Law Journal*, 109(6), 1279-1398.

최초 투고일 2020년 2월 7일
 게재 확정일 2020년 3월 30일
 논문 수정일 2020년 4월 1일

부록

- 김상운 (2002). 욕설의 특질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4권, 271-290.
- 김성원 (2012). 국제법 분석 도구로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논총>, 57권 4호, 87-112.
- 김종오·이대성 (2009). 법치국가의 위기와 공권력 무력화 현상에 관한 연구 -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15권 3호, 83-112.
- 김준호 (2017). 명예훼손 범리상 대통령은 공인인가. <저스티스>, 254-280.
- 박경신 (2009).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고려법학>, 5권 2호, 263-299.
- 박경신·김가연 (2011). 모욕죄의 보호범의 및 범위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10권 2호, 441-467.
- 손태규 (2013). 성직자와 종교 단체도 공인인가? <공법연구>, 42권 4호, 253-284.
- 이성기 (2014).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한양법학>, 25권 4호, 419-441.
- 이승선 (2007). '공적 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권 1호, 96-131.
- 이재진·이창훈 (2010). 법원과 언론의 공인 개념 및 입증책임에 대한 인식적 차이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8권 3호, 235-286.
- 이재진·진승현 (2018). 공인에 대한 언론사와 언론인의 인식 연구. <언론과 법>, 17권 1호, 1-50.
- 이준웅 (2009).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395-417.
- 이준웅 (2011). <말과 권력>. 파주: 한길사.
- 장경희 (2010). 국어 욕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29권, 401-427.
- Austin, J. L. (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김영진 (역) (1992). <말과 행위: 오스틴의 언어철학, 의미론, 화용론>. 파주: 서광사.
- Butler, J. (1997).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유민석 (역) (2016). <혐오 발언>. 서울: 알렘.
- Lukes, S. (1974). *Power: A radical view*. London: Macmillan. 서규찬 (역) (1992). <3차원적 권력론>. 서울: 나남.
- Waldron, J. (2012). *The harm in hate speec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홍성수·이소영 (역) (2017).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서울: 야후.

모욕죄 국내 판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박장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사)

이 연구는 극단적 발언(extreme speech)을 모욕죄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체계와 부합하는 것인지 문제제기한다. 극단적 발언을 당위론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거나, 경험적 근거없이 모욕죄가 발언의 자유의 위축을 비롯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성급히 결론짓기 보다는, 모욕죄 소송 국내사례들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모욕죄가 우리 사회에 실제로 적용되는 양상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모욕죄가 우리 사회의 발언의 자유 및 공동체 예절규범에 미치는 영향과 모욕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담론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 연구는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2019년 1월 1일 공개)을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모욕죄 단독 범인 1심 판결문 총 7,364건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표집을 통해 총 505건의 판결문을 추출했다. 이를 대상으로 경험주의 법적 방법론에 근거해 정량, 정성 분석했다. 총 505건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 모욕내용, 법원판결 등의 변수를 탐색하고 이 변수들 간 관련성 및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판례분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한 경향을 발견했다. 첫째, 모욕죄 소송이 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모욕죄 소송의 상당수가 특히 경찰관 대상 모욕이었는데, 모욕죄를 통해 결과적으로 공권력이 시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욕죄가 공권력에 대한 예절을 강제하는 담론권력으로 작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둘째, 모욕죄 소송이 사회적 위계가 낮은 이의 발언의 자유를 제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모욕죄가 사회적 약자의 저항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욕설을 사용하거나 모르는 이를 모욕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모욕죄가 공동체 예절규범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양식의 정착을 위해 극단적 발언을 지양해야 하며,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는 이들은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극단적 발언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극단적 발언을 규제하려 한다면 이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험사리 왜곡되고 오용될 수 있다.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을 타고 내려와 부적절한 모든 발언들을 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응징과 처벌 중심적 사회를 형성시킬 위험 또한 야기한다. 나의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개인의 양심의 판단이 아닌 법적 처벌 가능성을 염려해 판단해야 하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경계심에 말하기 두려워하는 잔뜩 움츠러든 시민들을 만들어 낸다. 과격하고 더럽고 무례한 발언들, 부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극단적 발언들을 용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장점을 향유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비용일 수 있다.

핵심어: 모욕죄, 발언/표현의 자유, 공동체 예절규범, 담론권력, 극단적 발언